

— 구미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3월 17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3월 21일

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정보실장 최 화 영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코자 시행하고 있는 주민 감사청구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이상 "주민수의 비율"로 정함.
-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감사청구 "인원수"를 정함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-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150분의 1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조4(주민의 감사청구) 제1항
-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 시행 권고(경상북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지방자치법에 “주민감사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/50 범위 내”에서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으며,
- 우리시 조례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1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 임.
-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위해 청구인수를 낮추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